제 1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4년 09월 29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윤**	윤** 1957-10-06	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산제당길	무단전출
윤**	윤** 1953-11-10	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학동길	무단전출
윤**	이** 1952-03-13	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학동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신 미화 문의전화 : 041-840-2757)

2014년 09월 18일

탄천면장 인

공주시탄천면장인